

의회에서 2회에 걸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나. 단기명 투표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1회에서 1인의 후보자를 먼저 결정한 후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다. 단, 1회에서 결정된 후보자가 비경력자 일 경우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 결정은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 중에서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3. 후보자 추천 방법

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추천자로 한다.

나. “가”항에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가”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 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추천자로 한다.

다. “나”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추천자로 한다.
- 2) 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자로 한다.
- 3)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2. 9.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2월 7일
유남렬의원의외 6인 제출

나. 회부일자: 1996년 2월 8일

다. 상정일자: 제3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6.2.9.)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유남렬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 14877호)의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여비규정(1995.12.29. 대통령령제14857호)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地方議會 議員이 회기중 會議에 出席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14877호)과 국내여비규정(1995.12.29. 대통령령제14857호)의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출장경비의 보전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의원이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 및 식비가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지급단가 인상 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어느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가?

○ 답변요지(유남렬 의원): 본 의원도 다소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나 지급단가의 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규정되어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6. 2. 7.
발 의 자 : 유남렬의원의외 6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 14877호)의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여비규정(1995.12.29. 대통령령제14857호)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개정골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안 별표1)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

14877호)제15조제2항

○국내여비규정(1995.12.29. 대통령령제14857호)제15조제1항

5. 예산조치 : 필 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중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37,500원	25,000원
18,000원	18,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의수당) ①의원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①의회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②~③항 (현행과 같음)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20,700	11,000	의 장						37,500	25,000
부의장	(생 략)							부의장	(현행과 같음)						
의 원						16,200	10,500	의 원						18,000	18,000
비고:1~3(생략)								비고:1~3(현행과 같음)							